

기자의 취재 현장 방문 주거침입인가 아니면 정당한 취재활동인가?



글 김재협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바른

I. 들어가면서

기자는 취재를 위하여 보도와 관련된 현장이나 취재원이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현장 등을 방문하는 일이 잦아질 수밖에 없다. 관련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현장 등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동의가 미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취재라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통상 관련 당사자에게는 사전 동의는 물론 사전 통보도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항상 첨예한 논란의 대상이 되기 십상이다.

최근 MBC 보도국장인 2013. 7. 취재차 보도국장실을 찾은 미디어오늘 기사를 무단침입 등으로 고소했다. 검찰은 2014. 1. 무단침입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



고, 퇴거불응으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하였고, 기자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해 현재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퇴거불응이 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의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¹⁾ 형식적으로 형법상 퇴거불응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

1) 취재 현장을 찾은 기자가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 문화방송이 조 기자를 고소했을 때 언론단체들은 취재를 거부할 순 있으나 취재를 위해 방문한 기자를 무단 침입과 업무 방해로 고소한 것은 언론사가 법을 악용해 언론 자유를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태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도 소속과 이름, 취재 목적 등을 밝히고 찾아간 것이어서²⁾ 취재를 위해 접근할 권리로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채널A의 '먹거리X파일' 프로그램 캡처(출처: 채널A 「이영돈 PD의 먹거리X파일 115화」, 2014년 4월 18일)

위 사건에서 언급된 유형 외에도 기자의 취재 현장 방문은 다양한 형태로 행해지기도 한다. 가장 흔한 경우가 상업적

목적을 위해 개방된 음식점이나 백화점 등을 방문해 해당 시설이나 상품, 서비스 등의 문제점을 취재하기 위한 것, 환경오염의 원인 물질 배출로 의심되는 사기업체의 공장 등에 접근하고 방문하는 일, 국세나 지방세 등 고액세금 체납자의 회사나 개인 주거 등의 취재를 위해 방문하는 일 등이다. 또한 근자에는 연예인 전문 파파라치에 해당하는 디스패치 등 언론매체의 등장으로 연예인이 활동하고 생활하는 드라마 촬영 장소, 외부 활동 장소는 물론 사적 공간인 주거지 등에 대한 몰래 접근하는 취재도 일상화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 글에서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취재 장소나 대상 인물에 대한 기자의 모든 접근 방법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 취재 대상자의 주거나 사무실 등 휴식이나 업무 공간에 접근한 경우를 한정하여 형사상 주거침입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형식적으로 주거침입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면책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지, 그 면책의 요건은 어떠한지 등의 법적 문제를 되짚어 보고, 아울러 그밖에 정당한 취재 방문으로 인정되는 요건과 범위 등에 관하여도 살펴보려고 한다.³⁾

II. 취재의 자유와 그 한계

언론보도의 자유는 보도할 자료를 수집하는 취재의 자유를 전제로 하여야만 의미가 있기 때문

2) MBC 관계자는 “조 기자가 MBC 출입기자로 정식 등록된 적이 없고, 출입기자는 MBC 홍보부에 ‘출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홍보부로부터 ‘상시출입증’을 받아야 출입이 가능하고, 상시출입증은 6개월 단위로 갱신된다”면서, 조 기자가 출입신청서 제출 사실이 없으며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들어왔다고 밝혔다. 는 “허락도 받지 않고 노조 사무실 뒷문을 통해서 몰래 보도국장실에 들어가 다짜고짜 물어볼 게 있다며 행패를 부렸다”고 밝혔다. 미디어오늘 측은 “조 기자는 MBC 출입기자에 등록된 기자”라며 “MBC에 출입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3) 다만 새로운 이론이나 관점을 부각시킬 것은 없는 쟁점이나, 지금까지 학계와 실무계에서 논의되어 온 관점을 위 문제에 한정하여 정리해 보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에 보도의 자유는 취재의 자유를 당연히 포함한다. 언론중재법은 언론이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3항). 그러나 취재의 자유는 언론의 취재활동을 방해하는 국가기관의 간섭을 배제할 권리로 소극적인 방어권이고,⁴⁾ 국가에 대한 권리로 사인에 대하여 바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기자가 취재의 자유를 발미로 임의로 사적 시설에 출입하거나 사인을 취재할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⁵⁾ 또한, 기자에게 취재의 자유가 인정되는 영역에서도 일반 국민에게 허용되는 이상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⁶⁾ 시간, 장소, 방법 등에 관한 사전제한도 허용되는 제한적 권리이다.⁷⁾

또한, 취재의 자유는 기자가 취재를 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권력기관이나 이해관계인 등이 이를 방해하고 간섭하지 말아야 하고, 언론사가 그러한 방해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의미이지, 나아가 정보공개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이나 사인이 적극적으로 취재기자의 취재행위에 능동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III. 취재를 위한 출입 및 접근이 허용되는 장소 등

1. 공개된 장소나 재난, 사고 장소 등

거리, 공원, 공항, 역, 터미널, 기타 공개된 장소로서 출입이 자유로운 장소는 교통이나 공공질서의 위배나 방해가 없는 한 기자의 취재를 위한 접근이 자유롭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그 경우에도 공원, 공항, 역 시설과 이용자의 안전과 평화에 관련된 관리자의 관리 행위에 의하여 제한된다.⁸⁾ 관리자의 제한 기준 설정은 내용 중립적인 시간, 장소, 방법에 의한 제한에 관하여 관리자의 결정이 도출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효율적인 사법적

4) 취재의 자유에 대한 법적 성격의 고찰로 자유권적 기본권이 아닌 매스커뮤니케이션의 기능보장이라는 헌법적 명령에서 도출되는 하나의 객관적 가치 질서로 보아, 사회공동체 전체가 그 권리의 주체이고 언론 현업에 종사하는 기자를 사회공동체의 수탁관리자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으나, 이에 관하여는 이 글에서는 다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고민수, 취재의 자유와 알권리에 관한 고찰, 미국법연구 18권 2호, 2007, 401-416쪽 참조.

5) 다만 이 원칙에 대한 예외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일반에 공개된 집회에서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회견을 표기한 완장을 착용한 기자에게는 출입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조 단서).

6)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344 판결 참조. 미국 연방대법원의 *Pell v. Procunier*, 417 U.S. 817 (1974) 판결이 밝힌 것도 마찬가지다.

7) 법정에서의 사진촬영·녹화·중계방송 등은 범인의 허가 없이는 행할 수 없고(법원조직법 제59조),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의 비밀에 관한 감청이나 통신자료 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없으며(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5조, 제6조 등), 군사기밀도 탐지·수집할 수 없다(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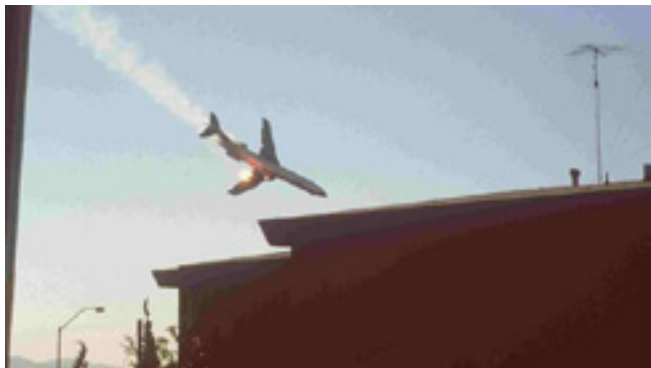
8) *Hefron v. ISKCON*, 452 U.S. 640, 647-50 (1981), and *id.* at 656; *Clark v. Community for Creative Non-Violence*, 468 U.S. 288 (1984) (심야 캠핑 장소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원에서 잠자면서 하는 시위는 금지된다. 취재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인 심사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⁹⁾ 이는 취재의 자유에 관한 제한 기준 설정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그런데 재난 현장, 육상이나 해상 사고, 항공기 사고나 범죄의 현장 등의 접근은 공공의 장소에 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다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즉 재난 현장은 경찰관, 소방관, 기타 구호 담당자 등이 비상 구조 활동이나 안전에 지장이 있거나 접근자에게 상당한 위험이 수반된다는 이유로 기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고, 범죄 현장에서는 경찰관 등이 증거의 보전과 훼손이나 유실의 방지, 수사에 관한 단서 확보 등 경찰수사에 장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목적, 특별한 경우 개인의 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도 기자의 접근도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경찰은 범죄와 사고 현장 접근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 기준과 명확한 내용을 설정하여야 하고,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한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고 현장에 대한 취재 기자의 접근과 촬영 금지 등에 관련된 판결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는 경찰 등이 사실상 사고나 범죄 현장 등에 대한 일정 범위 내의 접근 금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 기자가 그 가이드라인을 잘 따르고 있어 그러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을 뿐이지, 경찰관의 가이드라인에 관하여 기자의 불만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의 판례로 *Leiserson v. City of San Diego* (1986) 사건 판결이 판시한 바가 참고될 만하다[184 Cal. App. 3d 41 (1986)]. 이 사건은 1978. 9. 25. 샌디에이고 중심부의 주거 구역에 제트 여객기항공기 추락으로 약 150명이 사망한 사고 현장에서, 텔레비전 방송국 카메라 기자가 30여 분간 비디오 촬영을 하였다. 경찰이 추락지점에서 60피트에 출입차단선을 설치하고, 그 기자에게 그 밖으로 퇴거를 명하였다. 하지만 기자가 불응하자 현장에서 체포한 조치는 경찰이 비행기 추락사고 현장에 대한 수사 진행과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것이어서 불법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1978년 9월 25일, 샌디에이고에 추락하고 있는 제트 여객기항공기 모습 (출처 : U-T San diego, 「Crash of PSA Flight 182 vivid 35 years later」, 2013년 9월 25일자)

9) 1196 *Thomas v. Chicago Park Dist.*, 534 U.S. 316, 323 (2002).

나아가 취재 접근이 자유로운 공개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그 장소에서 특정인을 인터뷰하고자 하는 경우, 접근의 자유 여부는 그 대상이 공인인지, 사인인지 등에 따라 판연히 달라지고, 초상권, 사생활이나 프라이버시 보호 등에 관한 일반적 준수 원칙이 그대로 준수됨을 유념하여야 한다.¹⁰⁾ 그리하여 공적 장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접근이나 촬영 등이 지나칠 경우에는 위법하므로, 기자로 하여금 일정 거리 이내의 접근 금지조치를 명할 수도 있다.¹¹⁾

2. 공용청사 등 공적 시설

개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등 공용건물에는 기자의 취재를 위한 출입이 자유로이 허용됨은 당연하다. 그러나 공공 청사라 하더라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청사나 각종 외청, 대사관, 공공박물관이나 역사관, 정부문서 기록관리소, 연구소, 공적 도서관, 복지 시설, 경찰서, 검찰청, 법원, 교도소, 구치소 등 그 담당 업무의 내용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구별되는바, 그에 따라 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이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개인의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시설이나 업무 관리권자가 정하여 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시간, 장소 등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기자도 그에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법정의 출입은 헌법상 재판공개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취재를 위한 기자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된다.¹²⁾ 이에 따라 관행상 좌석 수가 제한된 법정에서도 기자를 우선 배려하여 일부 자리를 배정한다. 법원홍보업무에 관한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법원 내 기자들을 위한 기자실을 마련하여 출입기자의 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고 판결문 등의 자료도 열람하게 하는 등 언론기관의 취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되, 법원의 보안, 업무집행 또는 재판당사자의 인권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취재활동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내규 제10조, 제11조, 제12조). 한편 현재 출입기자가 법원 판사실 또는 사무과 직원 근무실에 입

10) 따라서, 공적 장소에서의 취재라고 하더라도 집요한 감시, 미행, 공격적 인터뷰, 워킹 카메라설치 등으로 무차별적인 취재를 하는 경우는 혼자 있고 싶은 권리(right to be let alone), 대중의 눈으로부터 개인적 특성이나 활동을 감추고 싶은 프라이버시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게 될 여지가 많다. 구체적인 취재 행태에 따라 위법성 여부가 결정될 것이나, 피해자의 개인 집 앞에서 상시 카메라를 설치하여 가족이나 드나드는 사람을 상시 감시하고 몰래 취재하는 행위, 피해자가 언론을 피하려는 적극적인 행위를 보이는데도 끈질기게 미행하여 지나치게 근접한 거리에서 몰래 촬영하는 행위 등은 사생활의 평온성을 해친 것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

11) *Galella v. Onassis*,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 13 Sept. 1973. 유명 인사나 공적 인물을 주로 촬영하는 전문 프리랜서 사진 작가인 Galella가 재클린 케네디 오나시스(전직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미망인)와 그녀의 아이를 촬영하면서, 그녀의 아들이 타고가는 자전거의 앞에 뛰어 들거나 모터보트에 위험할 정도로 근접하는 행동을 한 데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오나시스에게 25피트, 아이들에게 30피트 이내의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

12) 비공개로 진행되는 재판은 관계 당사자 외에는 그 재판 내용에 대해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므로, 특히 영장실질심사 재판에서 기자들이 출입문 틈새로 귀를 통해 재판진행 내용을 들으려 하는 등의 행위도 위법함을 유념하여야 한다.

의적으로 수시 출입을 하고 있으나, 일반 민원인에게 출입이 개방된 장소 이외의 공간에 대한 취재 출입은 법원의 시설 관리권에 따라야 하고, 취재대상이 판사이거나 일반직원인 경우 반드시 사전에 허락이나 동의를 받아 출입하고 만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다른 청사 등에 취재를 위한 출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IV. 취재를 위한 출입 및 접근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장소 등

1. 사유 재산 등 사적 공간

주택이나 아파트 주거, 호텔 등의 개인 휴식 공간, 사무실 등 개인 업무 공간 등은 관계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없이는 기자의 출입이 금지된다. 개인의 사적 공간(private places)의 보호는 헌법상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제10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권에 관한 규정(제17조), 형법상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형법 제316조, 제317조) 등을 들지 않더라도 사유재산권 이상의 보호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¹³⁾

사적 공간에 대한 기자의 출입과 취재 행위는 관계자의 동의를 받고 그 동의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허용되나, 그 경우에도 기자의 신분 위장 등에 의한 취재는 피해자의 동의를 무의미하게 할 수 있어 용인되지 않는다.¹⁴⁾ 사적 공간의 부당한 침범취재가 위법하다는 판례로는 방송국 기자가 압수수색을 하는 경찰을 따라 과외교습 현장인 연습실에 들어가 기자라는 신분을 밝히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촬영과 인터뷰를 하여 보도한 것은 배타적 사용공간인 연습실에서의 사생활과 초상권침해로 위법하다고 한 판결,¹⁵⁾ 종교단체 내부의 비리를 고발하는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기 위하여 그 단체의 사적 공간에 침입한 것도 은밀한 사적 영역의 침해로 위법하다고 한 판결¹⁶⁾ 등을 들 수 있다.

13) In *Garner v. Louisiana*, 368 U.S. 157, 185, 201-07 (1961); *Wilkins v. National Broadcasting Co.* (1999) 71 Cal. App. 4th 1066 [84 Cal. Rptr. 2d 329].

14) 과거에는 이러한 신분 위장 등을 통하여 불법 취재하여 특종을 올린 사례도 많았으나 {모 국회의원의 상시대 재단 비리 사건에 관하여 모 기자가 대검찰청 수사관으로 신분 위장하여 관련자를 압박한 사건, 1993년 상문고 비리 사건에 관하여 기자가 검찰청 직원으로 위장하고 서무담당자의 집에 들어가 관련 서류들을 몽땅 챙겨 나온 사건, 1998년 모 기자가 서울 강남 고액과외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서울지검 모 부장검사의 딸이 고액과외자 명단에 들어있다는 정보(후에 잘못된 정보로 밝혀짐)를 확인하기 위해 부장검사의 집에 전화를 걸면서 경찰이라고 신분을 위장한 사건, 대구대 비리사건을 취재하던 모 기자가 수사검사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에 보관된 참고인 진술조서를 몰래 프린트한 사건} 지금도 가끔 행하여지고 있다고 한다.

15) 서울고등법원 2001. 1. 11. 선고 99나66474 판결. 개인의 사적 공간에서의 취재는 비록 현행법으로 체포되고 있는 때라고 하더라도 체포와 관련하여 적법절차를 갖춘 사람 외에는 관계자의 동의 없이 출입이 금지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 위법한 취재행위로 얻어진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취재행위의 위법과는 별개로 공공성, 진실성 또는 상당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다.

16) 서울고등법원 2003. 3. 20. 선고 2002나23408 판결.

한편 최첨단 전자 장비의 비약적인 기술의 발달로 사적 공간에의 물리적 침입 없이 고성능 도청장치나 카메라 등으로 도청, 도촬하는 하이테크 기술에 의한 침해 행위¹⁷⁾¹⁸⁾도 위법함은 물론이다.¹⁹⁾ 언론중재법은 인격권의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5조 제2항), 승낙은 명시적이 아니어도 묵시적이거나 추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강압 등의 방법으로 강제적으로 승낙을 받은 것은 적법하지 않다. 승낙의 위법성조각은 승낙의 범위 내에만 미치고 이를 초과하여 승낙 당시 예상한 것과 다른 목적, 방법, 범위 등으로 침해된 경우에는 위법하다.

2. 준 공적 시설이나 장소

극장, 식당, 백화점, 상점 등 개인 재산이지만 일정한 목적하에 일반 공중에게 자유로운 출입이 개방된 공간을 준 공적 시설이나 장소(quasi-public places, semi-public places)라고 하는데, 이 공간은 개인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개방과 이용 목적상 공중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고 초대된 것이어서, 취재를 위한 기자의 출입도 공공의 장소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자유롭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소유자나 관리자의 개방 시간이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해진 원칙 등 관리 방침에 따라야 한다. 관리인이 기자에게 그에 위반된다고 하여 퇴거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응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거 불응, 영업 방해에 해당한다.²⁰⁾

V. 위법한 취재방법과 그로 인하여 취득한 정보 보도에 따른 위법성 조각사유 등

1. 취재 행위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일반적 원칙

언론중재법은 인격권의 침해에 관한 위법성 조각사유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동의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때를 명시하고 있다. 위법한 취재방법에 의한 정보의 수집 또는 조달은 취재 자유의 범위 내에 들지 않으므로 보호될 수 없다. 특히 그 방법이 형법 등의 규정에 위반되는

17) 몰래카메라의 사용이 초래하는 인격권의 침해와 취재의 자유 간에 상충되는 법익균형성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로는 김경호,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취재와 인격권의 침해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2003. 47권 3호, 4호 참조.

18) 스웨덴 의회가 2014. 5.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어야 하는 개인의 사적 공간을 관리자의 동의 없이 카메라 촬영한 행위를 2년 이하의 지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고, 2014. 7. 1.부터 발효된다고 한다. Techhive 인터넷 신문 2014. 5. 31.자 기사(Mikael Ricknas, IDG News Service).

19) 이와 같은 불법 취재행위에 관한 자세한 고찰은 박용상, 명예훼손법, 2008. 헌암사 756-790쪽; 박용상, 언론의 자유, 2013. 박영사, 258-268쪽; 김재협, 위법적 취재 관행과 법적 환경, 언론중재 1999 여름호, 62-79쪽 참조.

20) Marsh v. Alabama, 326 U.S. 501 (1946); Frisby v. Schultz, 487 U.S. 474 (1988).

경우 당연히 일반적인 법원리에 따라 형사책임을 진다. 취재의 위법성 판단 요소로는 취재와 보도의 목적과 내용, 취재대상자의 사회적 지위와 성격, 연령, 성별, 피해법익과 침해형태, 전후 사정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한다. 취재행위가 취재·보도 목적의 정당성(보도대상의 공공성, 보도목적의 공익성, 보도내용의 진실성), 취재 수단·방법의 상당성과 보충성, 취재행위로 인한 침해법익과 보호법익의 균형성 등이 갖추어지면 형법 제 20조에 의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행위로 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다.

2. 구체적인 판결례

가. 서울고등법원 2005. 8. 16. 선고 2005나10977 판결

방송의 제작진이 고의로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 없이 주거, 공장 등에서의 촬영과 인터뷰 강요한 행위에 관하여 사적 생활관계를 탐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방세 체납에 대한 고의성을 판단하고자 주거관계 및 회사의 운영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거주 주택, 이용 승용차, 운영 공장,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한 취재활동으로서 그 정도의 사생활 영역에 대한 취재 및 촬영이 필요하고도 부득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의 사생활이 일부 노출되거나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는 방송의 공익성, 그 취재·촬영의 수단 및 방법의 상당성 등을 참작할 때 수인하여야 할 범위 내에 속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6. 30. 선고 2002가단368619 판결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이사장이 그 직원과 여관에 들어가 장시간 있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촬영하고 취재한 행위에 관하여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운영에서의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등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관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활동의 성질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취재 내용은 동시에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되어 이사장으로서의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당시 상황에서 그와 같은 촬영 외에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취득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뚜렷이 없었으며, 촬영된 비디오 테이프 역시 실제로 이러한 목적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손해배상의 법적 책임이 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연예인에 대한 사진 무단 촬영 보도와 관련하여 동의 없이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양가 상견례, 데이트 장면 등을 상세히 묘사하고 무단으로 촬영한 사진을 함께 실는 보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고, 동의 없이 여자 연예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그 사진을 게재하여 보도함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세부적인 사생활 장면이 나타나는 사진을 제외한 부분의 보도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된 연예인의 사생활 영역에 관한 사항을 상당한 방법으로 공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다.

이 판결이 밝힌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재에 관한 일반적 법리의 설명이 다소 의미 있어 소개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더라도,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고,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그리고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

라.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639 판결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이 취재와 보도를 병자하여 고소인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기 위한 취지는 아니었던 점, 당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취재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인터뷰 협조요청서와 서면질의 내용을 그 자리에 두고 나왔을 뿐 폭언을 하거나 보도하지 않는 데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은 점, 관

할 세무서가 피고인의 제보에 따라 탈세 여부를 조사한 후 증여세를 추징하였다고 피고인에게 통지한 점, 고소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보도하는 경우 기자로서 보도에 앞서 정확한 사실 확인과 보도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취재 요청이 필요했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행위가 설령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사 작성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문기자의 일상적 업무 범위에 속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